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선임에 따른 운영규정

제정 2020. 5. 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감리자 선임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해체공사감리자) 해체공사감리자는 대구광역시장이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한 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4조 (해체공사감리자 선임 및 확정 통보) ① 허가권자는 법제 30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전자문서 등으로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해체공사감리자 선임을 의뢰하고, 협회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선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허가권자에게 통지하면,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 해체공사감리자에게 통보한다.

② 해체공사감리자 선임 방법 등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해체공사감리자 선임대상자 중 장기 출장, 질병 및 상해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협회에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제외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전 제외 신청 없이 해체공사감리자로 선임된 건축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선임 포기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재선임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포기서를 제출한 해체공사감리자는 당해 회차에서는 선임된 것으로 한다.

제5조 (해체공사감리자 선임제외)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선임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3.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4. 해체공사감리자가 특별한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5.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6. 관련 협회의 회원으로 징계 중에 있는 자
7.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제6조 (해체공사감리자 선임대장 작성) 협회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선임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해체공사감리자 선임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수행) ① 관리자와 해체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체공사감리자는 공사비내역서, 계약서 사본을 협회에 제출한다.

②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감리비 지불 방법 등) ① 관리자는 해체감리계약 체결과 완료보고서 제출 시 다음의 비율에 따라 감리비를 협회 지정 계좌로 납부한다.

구분	지 불 일	비 고
1차	감리계약 체결 시	50% 이상
2차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제출 시	잔금
	합 계	100%

② 협회는 관리자로부터 감리비가 입금될 경우 당해 해체공사감리자에게 익일 지급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감리비 지급 시 협회에 납부할 월정회비를 공제할 수 있다.

제9조(운영재원) 협회는 해체공사감리자 선임 등 동 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협회 회칙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운영회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운영회비에 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제10조 (문서보존) 협회는 이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보관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 선임의뢰서 - 3년
2. 해체공사감리자 선임 대장 - 10년
3. 기타서류 - 3년

제11조 (행정부서와의 협조) 협회는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허가권자와 상호 협조하도록 한다.

제12조 (결산) 제9조 규정의 운영재원의 결산은 협회 회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 (감사) 감사에 대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감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회 회칙을 준용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정 운영상 별도의 운영세칙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 이사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20. 5. 6. 제정)

제1조 (시행일 등) ① 이 규정은 2020. 5. 1.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해체공사감리자 선임의뢰서

건축물 위치			
관 리 자		전 화 번 호	
시 공 자 (상호명 포함)		전 화 번 호	
허 가 번 호		접 수 일	
		허 가 일	
건축물 용도		건축물 구조	
대 지 면 적	㎡	건축물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해체공사감리자	상호명	전화번호	자격번호
			감리자 성명

- ※ 첨부서류 : 1.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해체 신고서
2. 건축물 해체계획서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물의 해체공사감리자 선임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구청장(군수)

전 화 :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장 귀하

해체공사감리자 선임 포기서

발행번호	
건축물위치	
허가번호	
용도	
연면적 합계	m ²
관리자	
감리자 (성명/회사명)	

본인은 금회 해체공사감리자로 선임된 상기 건에 대해 _____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에 이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_____ (인)

회사명 : _____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장 귀하

해체공사감리자 선임에 따른 운영세칙

제정 2020. 5. 6.

개정 2021. 12. 7.

개정 2023. 1. 3.

제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이하 “협회” 라 한다.)의 해체공사감리자 선임에 따른 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15조에 의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회비 등) 규정 제9조에 따른 운영회비는 별표 1에 따르며, 협회는 규정 제8조에 따른 1차 감리비 지급 시 운영회비 차감 후 지급한다.

제3조 (해체공사감리자 선임방법 등) 규정 제4조 제2항의 해체공사감리자 선임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 선임은 대구광역시장의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선임한다.
2. 해체공사감리자는 선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작위 추첨을 통해 1인을 선임 하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 회차에 1회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해체계획서 작성자로 선임 의뢰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선임한다.
 - 가.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당해 회차에 미선임 된 경우 해체공사감리자로 선임한다.
 - 나.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당해 회차에 이미 선임 된 경우 1회에 한해 해체공사감리자로 선임하되 차기회차에 선임된 것으로 한다.<개정 2023.1.3.>
3. 제2호 단서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선임할 경우 진행 중인 해체공사의 감리업무 수행 중에는 중복 선임할 수 없으며, 해당 해체공사 감리업무 완료 후 협회로 완료보고 시까지 선임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1.3.>

부 칙(2020. 5. 6. 제정)

제1조 (시행일 등) 이 세칙은 2020. 5. 1.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12. 7. 개정)

제1조 (시행일 등) 이 세칙은 2022. 1. 1. 이후 최초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1. 3. 개정)

제1조 (시행일 등) 이 세칙은 2023. 1. 4. 최초 해체공사감리자 선임의뢰건 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운영회비

(단위 : 원)

운영회비	감리비의 3%
------	---------

1. 기존 감리비의 10%이상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회비를 최종감리비에 따라 재정산한다.
2. 운영회비 상한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